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주요 FAO

- 1.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(ChatGPT 등)만 허용하는 것인지?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?
- □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 되지 않으며, 생성형 AI(Generative AI)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
 - 2.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 없이 이용 가능한지?
- □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(SaaS 또는 PaaS)와 관계없이 **망분리 규**제 특례*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함
 - *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(해킹 등 방지대책)제1항에 대한 특례
 - 3.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?
- □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(해킹 등 방지대책)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,
 -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

- 4.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"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,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?
- □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'가명처리'란 「신용정보법」상 가명 처리를 의미하며,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
 -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**가명처리 수준 결정, 가명처리** 방법,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 필요
 - ※ '가명처리' 관련 상세 내용은 '금융분야 가명·익명처리 안내서' 참조
 - 5.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,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?
- □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(이하 "개보위")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함
 - 샌드박스 지정시 **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**에 대해서는 **개** 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,
 - 개인정보 처리·이전·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 가조건에 반영 예정
 - 6.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 · 컨설팅은 무엇인지?
- □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**보안대책을 부가조건**으로 부과
 - 금감원·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, 취약점,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,
 - **서비스 개시 전**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 예정

- 7.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,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?
- □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*되며, 기존 샌드 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,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함
 - * ①**데이터** : 개인(신용)정보 불가 → **가명처리된 개인(신용)정보 허용**
 - ② 프로그램 : 협업도구, ERP 등만 허용 → **보안, 고객관리, 업무자동화 등 추가 허용**
 - ③단말기 : 유선 PC만 허용 → 모바일 단말기도 허용
 - 이에,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
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,
 -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함
 - 8.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? 일회성 신청인지?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?
- □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**금년 9월 중**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,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(sandbox.fintech.or.kr)를 통해 안내할 예정
 -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, 신청
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

9. 연구 · 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?

- □ 연구·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**개별 금융회사**의 물적· 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(보안역량, 보호 필요성,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)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할 필요
 -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·시스템의 중요도·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·평가하여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,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
 - 다만, **망분리 예외**에 따른 **대체 정보보호통제** 등을 준수하고,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
 - ※ 금융회사 등이 연구·개발망 활용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은 연내 마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

10. 연구·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?

- □ 금년 말까지 연구·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「전자금융 감독규정」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,
 -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·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, 필요 보안대책,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